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1065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박한솔

변론 종결 2021. 1. 14.

판결 선고 2021. 3. 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9. 1.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8,931,5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9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차전550호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1. 'C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8. 8. 6.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8. 21. 확정되었다.
- 2)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2020. 2. 17. 기준으로 148,931,506원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 1) 피고의 배우자이자 C의 부친인 D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다. D가 2019. 1. 13.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C이 있었다.
- 2) 피고는 2019. 1. 13. C과 상속재산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5.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 었다. 반면 C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 E에 대한 구상금 채무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라.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는 2019.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6,5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에 의하면 앞서 본 것처럼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적극재산인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2/5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식당을 하면서 모든 돈으로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D가 2004년 뇌병변으로 갑자기 쓰러져 2019. 1. 사망하기까지 15년간 D와 동거하면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병원비와 약값을 부담하면서 D를 간병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및 상속재산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기여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2) 피고는, 피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300분의 233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자신의 기여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의 사망 전까지 D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기재 제3항 기재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고, 현재도 거주 중이며, D를 15년 간 병간호하면서 병원비, 생계비 등을 홀로 부담한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것일 뿐, C이 원고 등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또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근저당권말소 등의 사유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피고와 C 사이에 2019. 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5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피고가 2019. 3. 25. F조합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5지분의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3) 구체적 가액의 산정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및 현재 시가가 6억 원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 명의로 2006. 12. 5.채권최고액 4,4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및 현재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합계 1억 3,4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부동산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4억 6,600만 원(= 6억 원 - 1억3,400만 원) 중 C의 상속분 2/5에 해당하는 1억 8,640만 원(4억 6,600만 원 × 2/5)이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그리고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으로 원고가 구하는 2020. 2. 17. 기준으로 한 피보전채권액은 148,931,50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48,931,506원이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다. 소결

이 사건 부동산의 2/5지분에 관하여 2019. 1. 13.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148,931,5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8,9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혜정

목 록

1. 속초시 대 691㎡
2. 속초시 대 60㎡
3. 속초시 , 지상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06.26㎡

2층 86.92㎡. 팔.